

공공자전거운영및관리규정

제정 2016. 4. 4. 규정 제7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공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자전거(브랜드명 : 따릉이)”란 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 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서울자전거 이용약관”이란 공공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근무제도) 공공자전거 운영부서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휴무제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자전거 이용

제5조(이용) 공공자전거는 만15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단,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보류 및 거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1. 기술상의 문제로 공공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공단이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2. 가입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3.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7조(이용 시간 및 요금 등) 공공자전거의 이용 시간 및 요금, 요금 환불은 서울자전거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공자전거 관리

제8조(관리범위) ① 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회원 등록 및 관리, 결제, 요금정산, 민원처리, 자전거 재배치, 각종 통계관리, 현장 점검 등)
 2. 공공자전거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3. 공공자전거 홍보 및 자전거관련 행사 개최
 4. 공공자전거 관련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관리
 5.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제공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시스템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제10조(안전점검) 공단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처리) 공공자전거 이용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금 관리

제12조(수입금보고) 담당자는 공공자전거의 수입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한 수입금 집계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결산 및 납입) 공단은 수입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가 지정한 금고에 익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납입이 곤란할 경우 수입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입금 처리 절차에 따라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2016.4.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